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정동만 · 이인선 · 김선교
윤영석 · 김성원 · 구자근
김승수 · 서일준 · 정성국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병역법」”을 “의무장교는 2년 2개월로 하며, 「병역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과 병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	4. ----- -----.
	----- <u>의무장교는 2년 2개월로 하며, 「병역법」</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